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209

제출년월일 : 2012. 1. / /  
제출자 : 안산시 / 장

## □ 개정이유

- (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 ( ) 민선 5기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기능 재 배분을 통하여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일부 부서 편제 및 행정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사업소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 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비전센터를 둠(안 제2조).
- 나. 본청에 행정국·기획경제국·주민복지국·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두고,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평생교육과 및 정보통신과,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세정과·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일자리정책과 및 식품위생과,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재난안전과·토지정보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며, 각 국별 행정사무를 분장함(안 제6조부터 제10조).
- 다. 사업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소의 장 명칭 및 사업소의 조직과 기관장의 사무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
- 라.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별표 1]를 조정하고,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별표 2]에 반월도시보건지소를 추가함(안 제4조, 제12조).

## □ 개정조례안 : 불임

##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별첨

( ) 입법예고 : 2012. 1. 3. ~ 1. 13.(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중앙 도서관, 감골도서관,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비전센터

제3조 제2항 중 “사업소장”을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행정국·기획경제국·주민생활국·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행정국·기획경제국·주민복지국·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문화예술과 및 정보통신과”를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평생교육과 및 정보통신과”로 하고,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생학습 및 학교 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세정과·기업유치과·경제정책과·녹색성장과·관광해양과 및 생명산업과”를 “기획예산과·세정과·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로 하고,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4.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제목 “주민생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하고, 제1항 중 “주민생활국에는 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일자리정책과·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일자리정책과 및 식품위생과”로 하고, 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1.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복지정책 및 기초생활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 및 재난안전과”를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재난안전과·토지정보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고,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 및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4.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 재난안전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지리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제18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산업지원사업소·지식정보사업소·외국인주민센터·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관광본부·산업지원본부·상하수도사업소·외국인주민센터·중앙도서관·감골도서관·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여성비전센터”로 한다.

제19조 중 제목 “소장”을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각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을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소장이”를 “사업소의 장이”로 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다음과 같이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체육관광본부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나.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 다. 관광정책, 개발 마케팅에 관한 사항
  - 라. 해양개발 및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원본부에는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 등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안산사이언스밸리·연구기관 관리 등 과학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국제 통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라. 외국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 바. 건축민원 등 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사.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차. 악취측정상황실 운영 및 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산업정책 및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수도시설, 급수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바.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5.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관산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골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감골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성포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U-정보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U-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공공시설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자동차 및 견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자동차 및 견설기계 책임보험·저당권에 관한 사항
- 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여성비전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 업무담당국장” 을 “사업소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②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호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③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④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5)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재업무담당국장” 을 “문화재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6)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호 “각 기금별 담당 국·소장” 을 “각 기금별 담당 국장 및 사업소의 장” 으로 한다.

(7)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업업무담당국장” 을 “기업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8)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호 “시 노동업무담당국장 및 고용정책담당국장” 을 “시 고용정책 담당국장 및 노동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9)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호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10)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호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1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권 오 달
안	계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계장 정 명 현
자	담당자 성명·전화	임 준 수 (행정 3108)

[별표 1]

##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본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고잔동)
안산시 감골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 (사동)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청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 (일동)
	이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 46 (이동)
	사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1 (사동 )
	사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52 (사동 )
	사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 (사동 )
	본오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 (본오동)
	본오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동)
	본오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동)
	부곡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동)
	월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 4 (부곡동)
	성포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8 (성포동)
	반월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 (건건동)
	안산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단원구청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 (와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52 (고잔동)
	고잔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고잔동)
	호수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5 (고잔동)
	원곡본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
	원곡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 (원곡동)
	원곡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91 (원곡동)
	초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 (초지동)
	선부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47 (선부동)
	선부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 (선부동)
	선부3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47 (선부동)
	대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대부북동)

[별표 2]

###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비 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일원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일원	
안산시 원곡보건지소	안산시 일원(외국인근로자)	
안산시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안산시 반월도시보건지소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일원	
안산시 대부남동보건진료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지식정보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li> <li>3. (생략)</li> </ol> <p>제3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1) (생략)</p> <p>(2)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기회경제국·주민생활국·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p> <p>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1)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문화예술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p> <p>(2)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li> <li>5. (생략)</li> </ol> <p>제8조(기회경제국에 두는 과) (1) 기회경제국에 기획예산과·세정과·기업유치과·정책정책과·녹색성장과·관광해양과 및 생명산업과를 둔다.</p> <p>(2)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신재생 및 에너지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관광, 해양개발 및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li> <li>7.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li> </ol>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사업소 :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비전센터</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3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1) (현행과 같음)</p> <p>(2) ----- ----- 사업소의 장 ----- ----- -----</p> <p>제6조(국의 설치) ----- ----- 주민복지국 ----- -----</p> <p>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1) ----- ----- 평생교육과 ----- -----</p> <p>(2)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평생학습 및 학교 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현행과 같음)</li> </ol> <p>제8조(기회경제국에 두는 과) (1) ----- ----- 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를 둔다.</p> <p>(2)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li> <li>6.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li> </ol> <p>&lt;삭제&gt;</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1) 주민생활국에는 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일자리정책과·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p> <p>(2)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생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복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기초생활, 장애인,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 4. (생략)</li> <li>5.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li> <li>6. 식품안전·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li> </ol>	<p>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1)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일자리정책과-----</p> <p>(2)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복지시책 및 기초생활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장애인,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 4. (현행과 같음)</li> <li>5. 식품안전·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li> </ol> <p>&lt;삭제&gt;</p>
<p>제10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1)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 및 재난안전과를 둔다.</p> <p>(2)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도시경관 및 디자인,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li> <li>4. 건축 및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li> <li>5. 건설, 도로, 지리정보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재해대책, 재난안전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li> </ol> <p>&lt;신설&gt;</p>	<p>제10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1) -----건축과·건설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p> <p>(2)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건축 및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li> <li>4.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재해대책, 재난안전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li> <li>6.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지리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li> <li>7.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li> </ol>
<p>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1) (생략)</p> <p>(2)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li> <li>2. ~ 6. (생략)</li> </ol>	<p>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li> <li>2. ~ 6. (현행과 같음)</li> </ol>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 사업소·산업지원사업소·지식정보사업소·외국인주민센터·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	제18조(설치) ----- 문화체육관광본부·산업지원본부·상하수도사업소·외국인주민센터·중앙도서관·감골도서관·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여성비전센터-----
제19조(소장) 각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소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도시설, 급수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마.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원사업소에는 기업민원과, 공단환경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건축민원 등 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나. 노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 사업소의 장이 -----  1. 문화체육관광본부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나.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다. 관광정책, 개발, 마케팅에 관한 사항 라. 해양개발 및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원본부에는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 등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안산사이언스밸리·연구기관 관리 등 과학지원에 관한 사항 다. 국제 통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마. 악취측정상황실 운영 및 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바. 건축민원 등 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사.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악취측정상황실 운영 및 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산업정책 및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사업소에는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평생학습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도시설, 급수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마.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5. U-정보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U-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공공시설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에 관한 사항</p> <p>라.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p>	<p>5.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관산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6.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저당권에 관한 사항</p> <p>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p> <p>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p>	<p>6. 감골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감골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성포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7.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p> <p>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7. U-정보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U-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공공시설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에 관한 사항</p> <p>라.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p>
<p>&lt;신설&gt;</p>	<p>8.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저당권에 관한 사항</p> <p>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p> <p>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p>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9.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10. 여성비전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22 (사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산업지원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지식정보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고잔동)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00 (사동)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본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고잔동)
안산시 감골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 (사동)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상록구	인천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15 (사동)
	일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구룡로 71 (일동)
	이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이동로 46 (이동)
	사1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석호로 171 (사동)
	사2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감골1로 52 (사동)
	사3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40 (사동)
	본오1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오목로7길 15 (본오동)
	본오2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동)
단원구	인천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동)
	부곡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동)
	월파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사낭북로 4 (부곡동)
	성포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충장로 468 (성포동)
	반월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건건로 51 (건건동)
	안산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단원구청
	인천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자동)
	와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선부로 273 (와동)
안산시	고잔1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52 (고잔동)
	고잔2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고잔동)
	호수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광덕2로 125 (고잔동)
	원곡본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원본로 15 (원곡동)
	원곡1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원선로 31 (원곡동)
	원곡2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원선로 91 (원곡동)
	초자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동산로 253 (초자동)
	선부1동 주민센터
단원구	인천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47 (선부동)
	선부2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자곡로 46 (선부동)
	선부3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선삼로 47 (선부동)
	대부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대부북동)

##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상록구	인천시 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일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성호로 53 (일동)
	이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아동로 46 (이동)
	사1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석호로 171 (사동)
	사2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감골1로 52 (사동)
	사3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해양로 8 (사동)
	본오1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샘골로 16 (본오동)
	본오2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동)
단원구	인천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동)
	부곡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동)
	월파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시낭북로 4 (부곡동)
	성포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충장로 468 (성포동)
	반월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건건로 51 (건건동)
	안산동 주민센터
	인천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단원구청
	인천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자동)
	와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선부로 273 (와동)
안산시	고잔1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52 (고잔동)
	고잔2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고잔동)
	호수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광덕2로 125 (고잔동)
	원곡본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
	원곡1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원선로 31 (원곡동)
	원곡2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원선로 91 (원곡동)
	초자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초자동로 67 (초자동)
	선부1동 주민센터
단원구	인천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47 (선부동)
	선부2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자곡로 46 (선부동)
	선부3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선삼로 47 (선부동)
	대부동 주민센터
	인천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대부북동)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12조제3항 관련)**

명칭	관할구역	비고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일원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일원	
원곡보건지소	안산시 일원(외국인근로자)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신설>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12조제3항 관련)**

명칭	관할구역	비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일원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일원	
안산시 원곡보건지소	안산시 일원(외국인근로자)	
안산시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안산시반월 도시보건지소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일원	
안산시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